##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1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전진숙・민형배・박 정

김남희 · 이정문 · 윤후덕

김선민 • 이연희 • 박희승

김현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도 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·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.

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 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그 결과,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.

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·과정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·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·과정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·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제1항제2호 중 "제11조제1항을"을 "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"로, "사업실적을"을 "사업실적 등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보고의무) ① (생 략)	제11조(보고의무) ① (현행과 같		
	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		
	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		
	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		
	<u>별 유치 방법·과정, 외국인환</u>		
	<u>자 유치사업자의 소개·알선</u>		
	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		
	<u>야 한다.</u>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제3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31조(과태료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	
부과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<u>제11조제1항을</u> 위반하여 <u>사</u>	2.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		
<u>업실적을</u> 허위로 보고한 자	<u>사업실적 등을</u>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